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|---------|
| 의안번호 | 16 - 37 |
|------|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6. 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민선6기 후반기 역점사업 및 현안 중점사업 추진과 새롭게 변화된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주민 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를 신설하여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, 청소 행정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안전행정국 내 다른 부서 및 동 주민센터 행정과 협조체제 강화 (안 제4조)
- 나. 기획경제국 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진흥과 통합 후 일자리경제과를 신설 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, 징수과를 신설 하여 세무부서를 징수와 부과체제로 개편하여 세원 확대 도모 (안 제5조)
- 다. 생활체육과를 복지교육국으로 이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(안 제6조)
- 라. 동의 직무 중 사회복지를 추가하여 복지사무를 동 행정의 기초사무로 표명 (안 제13조)
- 마. 기타 사무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, 표기 조정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)부터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제외 법령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6. 4. 21. ~ 4. 26. 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제외 법령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제외 법령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및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, “설치·조직”을 “설치 등 조직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국장 및 담당관·과의 직급 등)”을 “(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 국장 및 보건소장, 본청·보건소의 담당관·과장, 동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·과장, 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, 제3조의2제2항 중 “주민생활국”을 “복지교육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총무과·자치행정과·문화관광과·민원여권과·전산정보과·생활체육과”를 “총무과·자치행정과·문화진흥과·관광과·민원여권과·

전산정보과·청소행정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의2.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4조제2항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5호 중 “및 기타”를 “및 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44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4. 쓰레기 종량제 업무에 관한 사항

45.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

46.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47. 공중화장실의 설치·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(공원 내 공중화장실 제외)

48.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

49.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50.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
51.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·지역경제과·일자리진흥과·재무과·세무1과·세무2과”를 “기획예산과·일자리경제과·재무과·징수과·세무1과·세무2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5호 중 “취약계층”을 “취약계층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복지행정과·생활보장과·어르신복지장애인과·가정복지과·교육청소년과·청소행정과”를 “복지행정과·생활보장과·어르신복지장애인과·가정복지과·교육청소년과·생활체육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0

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38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8. 생활체육·건강생활 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39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40. 생활체육·건강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제2항제54호 중 “및 기타”를 “및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0호 중 “관한사항”을 “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”로 하고, “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”을 “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지휘 감독한다”를 “지휘·감독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보건행정과, 위생과, 지역보건과, 의약과”를 “보건행정과·위생과·지역보건과·의약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건소”를 “보건소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“기타 보건복지부령이”를 “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조직운영”을 “조직운영, 자치회관 운영, 사회복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 중 “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”를 “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”로, “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3항 중 “복지교육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중 “복지교육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복지교육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복지교육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복지교육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」 제5조 관련, 별표 “위임사무”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주관국란 중 “주민생활국(사회복지과)”를 “복지교육국(생활보장과)”로 한다.

나. 사무명란 중 “2.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”를 “1.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”로, “3.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”를 “2.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”로, “4. 시체매장· 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”를 “3. 시체매장· 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”로 하고, 주관국란을 “복지교육국(어르신복지장애인과)”로 한다.

다. 주관국란 중 “기획재정국(지역경제과)”를 “기획경제국(일자리경제과)”로 한다.

⑦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경제진흥팀장”을 “지역경제팀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지역경제과”를 “일자리경제과”로 하고, “경제진흥팀장”을 “지역경제팀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의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세무1과장”을 “징수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</u>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<u>설치·조직</u>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국장 및 담당관·과의 직급 등) <u>구본청 국장의 직급, 본청·보건소의 담당관·과장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·과장 등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조의2(한시기구)</p> <p>① <u>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추진</u>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및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</u>----- ----- ----- <u>설치 등 조</u>----- <u>직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본청 국장 및 보건소장, 본청·보건소의 담당관·과장, 동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<u>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·과장, 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3조의2(한시기구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|

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소속으로 한시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.

②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에 한시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을 둔다.

제4조(안전행정국)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·자치행정과·문화관광과·민원여권과·전산정보과·생활체육과를 둔다.

② 안전행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14. (생략)

14의2.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

15. ~ 27. (생략)

28. 생활체육·건강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9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30. ~ 34의2. (생략)

35. 일반여권 접수·교부 및 기

② -----

---- 복지교육국-----

-----.

제4조(안전행정국) ① -----
--- 총무과·자치행정과·문화진흥과·관광과·민원여권과·전산정보과·청소행정과-----.

② -----
-----.

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4의2.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15. ~ 27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30. ~ 34의2. (현행과 같음)

35. ----- 및 그

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

36. ~ 37. (생략)

38. 생활체육·건강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39. ~ 4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제5조(기획경제국)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·지역경제과·일자리진흥과·재무과·세무1과·세무2과를 둔다.

② 기획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는

밖에 -----

36. ~ 37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9. ~ 43. (현행과 같음)

44. 쓰레기 종량제 업무에 관한 사항

45.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

46.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47. 공중화장실의 설치·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(공원 내 공중화장실 제외)

48.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

49.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50.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
51.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(기획경제국) ① -----

--- 기획예산과·일자리경제과·재무과·징수과·세무1과·세무2과-----.

② -----

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44. (생략)
- 45.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

제6조(복지교육국)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행정과·생활보장과·어르신복지장애인과·가정복지과·교육청소년과·청소행정과를 둔다.

② 복지교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29. (생략)
- 30. 쓰레기 종량제 업무에 관한 사항
- 31.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
- 32.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3. 공중화장실의 설치·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(공원 내 공중화장실 제외)
- 34.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
- 35.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- 36.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37.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

-----.

- 1. ~ 44. (현행과 같음)
- 45. ----- 취약계층 -----

제6조(복지교육국) ① -----
 --- 복지행정과·생활보장과·어르신복지장애인과·가정복지과·교육청소년과·생활체육과
 -----.

② -----
 -----.

- 1. ~ 29. (현행과 같음)
- 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7조(도시환경국) ① (생략)

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53. (생략)
- 54.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
- 55.·56. (생략)

제8조(교통건설국) ① (생략)

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9. (생략)
- 10. 구도의 안전표지, 노면표지, 표지병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
- 11. ~ 15. (생략)

38. 생활체육·건강생활 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39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40. 생활체육·건강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(도시환경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- 1. ~ 53. (현행과 같음)
- 54. ----- 및 그 밖
에 -----
- 55.·56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교통건설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10. -----
----- 관한 사항
- 11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도로·지하도·하천·구거
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
 관리에 관한 사항

17. ~ 45. (생략)

제9조(설치) 「지방자치법」 제11
 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
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7조에
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.

제10조(소장) ① (생략)
 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
 보건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소
 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11조(직제 및 업무) ① 보건소
 에 보건행정과, 위생과, 지역보
 건과, 의약과를 둔다.
 ②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
 각 호와 같다.

1. ~ 13. (생략)

14.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
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
 지사업

15.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
 의 향상·증진 및 이를 위한
 연구 등에 관한 사업

16. · 17. (생략)

16. ----- 그
 밖에 -----

17. ~ 4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설치) 「지방자치법」 (이
 하 "법"이라 한다) 제113조 ---
 및 같은 법 시행령-----
 -----.

제10조(소장) ① (현행과 같음)
 ②-----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 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--
 ----- 지휘·감독한
 다.

제11조(직제 및 업무) ① -----
 - 보건행정과·위생과·지역보
 건과·의약과-----.

② 보건소장-----
 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----- 그 밖에 보
 건복지부령으로 -----
 --

15. 그 밖에 -----

16. · 17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직무) ① 동은 행정의 능력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 발급, 통·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

② 동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관장한다.

제14조(동장) ① (생략)

② 동장의 직급과 동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(관할구역)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, 그리고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직무) ① -----

조직운영, 자치회관 운영, 사회복지 -----.

<삭 제>

제14조(동장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5조(관할구역)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-----

-----법 제4조

의2제4항에 따른---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1호 해당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안전행정국 총무과 서은영 |
| 연 락 처 | 02-3153-8216 |